

# 「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」 개정내용

2008. 11

주 택 토 지 실  
(택지개발과)

## 1. 추진배경

- 현재 공공기관은 의무 후분양, 민간은 후분양 선택시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으로 운영중
  - 민간부문 공급위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후분양에 따른 분양시기 지연시 수급불안 우려
- ※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('08.8.21)에 포함

## 2. 개정내용

### □ 공공택지 후분양 참여 민간업체 우선공급 삭제

-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건설용지를 민간 주택업체에게 공급시
  - 동일순위\*에서 실제 건축공정이 전체건축공정의 40%에 달한 후 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중
- \* 민간 업체에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수요자가 많은 경우 최근 3년간 300세대이상 주택건설실적(또는 준공실적)이 있는 자중 추천공급

⇒ 민간부문 공급위축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후분양에 따른 분양시기 지연시 수급불안 우려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후분양 업체 우선공급 조항 삭제(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)

※ 붙임 :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개정(안)

##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

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. 11. 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4조(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)</p> <p>①~③ (생략)</p> <p>④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순위내에서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%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우선 공급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사업시행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용지를 우선 공급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당해지구 입주자모집승인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주체가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%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제24조(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)</p> <p>①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